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51480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690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5148077 판결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4. 6. (피고 A에 대하여)

2017. 8. 24. (피고 B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7. 9.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206,742원과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2016. 8. 17.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 A과 보증원금 6,93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3.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8. 우리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68,206,74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2015. 9. 1.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만),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68,206,74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6. 8. 17.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피고 B의 남편인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 B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은행에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인출하는 등 피고 A 등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A 등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남편인 C은 서울 구로구 E건물 1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4. 3. 26.경 피고 B에게 분양권 전매 형식으로 명의를 넘겼다가 2014. 4. 7.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한 사실, C은 2014년 4월 무렵 친구인 F를 통해 소개받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G와 피고 A 등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을 피고 A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이름 란에 피고 B의 이름(개명 전 H)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전세자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피고 B는 2014. 5. 20. 우리은행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A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이후 2014. 5. 22. 피고 A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700만 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피고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위 7,700만 원 중 7,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자신이 가진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 A 등과 공모하여 우리은행에서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피고 B가 피고 A와 C 등의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 B가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후 보증금이 입금되자 이를 찾아 C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C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에게 C 등의 불법행위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관리나 처분은 C이 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는 C이 공범인 피고 A과 G, F 등과 공모하여 피고 B 명의로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서, 피고 B는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갑 제4, 5, 6호증, 증인 C, 필적감정결과).

③ 피고 B가 우리은행 직원이 제시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 제10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본문의 임대차계약 내용 등은 모두 C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 B는 단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니 확인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5, 6호증, 증인 C, 필적감정결과).

④ 피고 B는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7,700만 원 전액을 C에게 주었을 뿐, 그 대가를 취득하거나 사용에 관여한 적은 없다(을 제3 내지 7호증, 증인 C).

⑤ 우리은행이 피고 A에게 대출한 근로자 전세자금은 원고가 그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다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작성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을 제7호증, 증인 C), 당시 우리은행 직원 등이 피고 B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취지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편취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이나 경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⑥ 결국 피고 B는 남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C이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고, 곧이어 보증금이 입금되자 이를 C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거나 C 등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김인택